교원재임용 평정규정

1985. 09. 10. 최초제정 2021. 01. 01. 부분개정

1992. 10. 15. 부분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08. 10. 06. 부분개정

2010. 02.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임용 기간 내 교원(이하 겸임 및 조교는 제외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수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2조(재임용시기) 매년 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제3조 삭제<2024.05.01.>

제4조(재임용 및 탈락기준) ①재임용 대상 교원별 해당 기간 동안의 교원성과평가 결과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한다.<개정 2024.05.01.>

- ②교원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 20% 그룹에 속할 시에는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05.01.>
- ③재임용 탈락대상자는 발령절차 없이 임기만료일 면직된다.

제5조(교원의 재임용)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24.05.01.>

제6조(재임용의 계약조건) ①재임용기간은 정관 제39조의4제1항에 의거하고, 계약조건은 정관 제3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의거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4.05.01.>

- 1. 근무기간<개정 2016.04.01., 2024.05.01.>
 - 가. 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24.05.01.>
- 나. 부교수 :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개정 2024.05.01.>
-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삭제<2024.05.01.>
- ②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05.01.>

제7조(임용기간만료의 통지)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05.01.>

제8조(재임용 신청) 임용기간만료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재임용 심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05.01.>

제9조(재임용 심의 및 결과 통지) ①재임용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집계된 교원성 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24.05.01.>

②재임용 신청자에 대해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05.01.>

③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05.01.>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 삭제<2024.05.01.>

제11조(재임용 심의 절차) ①삭제<2024.05.01.>

②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평정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 하여 2022년 3월1일 재임용까지 평정하고 2022년 9월 1일 재임용부터는 재임용 평정을 교원성과평가로 평정한다.<개정 2021.01.01.>

- 1. 교원업적평가
- 2. 학과평가
- 3. 강의평가 (강의소감)
- 4. 대학발전공헌도평가
- 5. 포상 및 징계

제12조(심사청구) 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05.01.>

제2장 보칙

제13조(평정) 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처리) ①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업무 및

연구실적물환산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와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24.05.01.>

부 칙

①(시행일) 본 기준 (규정)은 1985. 09.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05.01.>

교원평가(재임용) 평정표

피평정자			소속			직급				성명		
	교원성과평가											
년도	교육	F	연구	산학	학과 평가	가치관 및 자기평가	대학 참여도	대학 발전		가감?	점	합계
평 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위원성명	(서명)
	교원인사	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임용(계약)기간 만료예고 통지

소 속			
성 명	직	그	
주민등록번호			
전 임용(계약)기간			

귀하는 20 년 월 일부로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오 니 재임용(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재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청운학원이사장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별지 제3호 서식]

재임용(재계약) 심의 신청서

소 속			
성 명	직	그	
주민등록번호			
임용(계약)만료일			

상기 본인은 상기 임용계약만료일부로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법인청운학원이사장 귀하 대 전 보 건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임용(재계약)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소 속							
성 명					직	그	
주민등록번호							
임용(계약)만료일	20	년	월	일			

상기인의 재임용(재계약)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재임용(재계약) 결과	수락 (acceptance)	거부 (rejection)	
재임용(재계약) 기간			
사 유			

20 년 월 일

학교법인청운학원이사장 대전보건대학교 총장